신규사업선정평가지침

제정 2013.06.27. 개정 2023.09.11. [신사업개발부 042-600-8348]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신규사업 선정 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신규사업 선정평 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신규사업 선정 평가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국내·외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,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
 - 1. 신규사업이라 함은 정관 제2조(목적)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중 우리공사가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추정가격(사업비) 5억원 이상의 수주사업을 말한다. 이때, 신규사업 여부는 시행부서에서 판단하되, 판단기준이 모호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주관부서에 검토 의뢰하여 신규사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2. 신규사업선정평가지침이라 함은 신규사업을 전개하기 이전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력도, 적합도, 리스크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말한다.
 - 3. 신규사업 선정 주관부서라 함은 신규사업 선정 평가지침의 제정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4. 신규사업 선정 평가 요청부서라 함은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 2 장 신규사업 선정평가 심의위원회

제4조(위원회 설치) 신규사업 선정 평가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선정평 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 제5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1. 위원장 : 에너지사업개발처장
- 2. 위 원: 기획예산부장, 재경관리부장, 생산기술부장, 플랜트기획팀장, 수소건설기획팀장
- 3. 간 사 : 신사업개발부장

제6조(위원회 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신규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신규사업 선정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신사업개발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간사의 직무는 신사업 개발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위원회 소집) ①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한 심의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야하다
- ② 위원 궐위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하위 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의 의결 및 시행) ①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② 긴급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,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
제3장 신규사업 선정평가 절차

- 제10조(선정 평가 요청) ① 정관 제2조(목적)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신규사업 선정 주관부서로 신규사업 선정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신규사업 선정 평가 요청부서는 별지 서식 1에 따라 신규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선정 평가 계획 수립) 신규사업 선정 주관 부서는 신규사업 선정 평가계획을 수립,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선정 평가 심의) ① 위원회는 부의된 신규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출일자부터 1개월 이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신규사업 선정 평가 이전에 부의된 신규사업이 정관 제2조(목적)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부의된 신규사업 사업계획을 심의 후 별지 서식 2의 신규사업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.
- ④ 신규사업 선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부서에 신규 사업에 대한 조사, 분석 및 의견 제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, 분석 및 의견 제출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⑤ 신규사업 선정 주관 부서의 평가업무 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, 신규사업 선정 평가 요청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장은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영기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재심 요청) ① 신규사업 선정 평가 요청부서는 1회에 한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을 별지 서식 3의 재심청구서에 의거, 신규사업 선정 주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재심 청구는 선정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 - ③ 신규사업 선정 주관 부서는 재심 요청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부의하여야 한다.

제4장 시행 및 사후관리

제14조(시행) ① 경영기획심의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사업은 시행부서장(신규사업 선정 평가 요청 부서장)의 책임하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. 단, 투자가 동반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투자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시행부서장은 신규사업 시행 중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사업 선정 주관 부서장에게 사업 중단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사후관리) 신규사업 시행담당자는 사업종료 후, 결과보고서를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고, 시행부서장은 이를 참조하여 차기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서식 1>

신규사업 사업계획서

1. 신규사업 개요

| 사 업 명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내용 | (사업의 내용, 목적, 필요성 등) |

2. 시장분석

| | (현재 및 향후 5년간 시장 전망, 특성 등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내외 시장규모 및 특성 | |
| | (신규사업 주 수주처) |
| 주요 사업처 현황 | |
| | (유사사업 및 사업화 현황, 경쟁회사 등) |
|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 | |
| 경쟁력 현황 | (주요 경쟁회사와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 등 비교) |
| | |

3. SWOT 분석

| | 내적요인 | 강점 | 약점 |
|----------|------|----|----|
| | | | |
| | 외적요인 | | |
| 기회 요인 | | | |
| 위협 요인 | | | |

(단위 : 백만원)

4. 매출계획 및 마케팅전략

| | 사업명 | 수주건수 | 0000년 | 0000년 | 0000년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| | |
| 매 출 계 | | | | | |
| 회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마 케 | | | | | |
| 팅 | | | | | |
| 전 략 | | | | | |
| | | | | | |

5. 추정 손익계산서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0000년 | 0000년 | 0000년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매 출 액 | | | |
| 매 출 원 가 (-) | | | |
| 판매관리비 (-) | | | |
| 영 업 이 익 | | | |
| 경 상 이 익 | | | |
| 법 인 세 등 (-) | | | |
| 당 기 순 이 익 | | | |
| (연구개발비) | | | |

6.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| | 소 요 | 자 금 | | | | | 조 달 계 | 획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|---|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용 | 도 | 내 | 용 | 금 | 액 | 조달 | 방법 | 기조달액 | 초가조달액 |
| | | | | | | 자기기 | 자금 | | |
| 운 | 전 | | | | | 차 입 |] 금 | | |
| 자 | 급 | | | | | 투자요 | -청액 | | |
| | | 소 | 계 | | | 소 | 계 | | |
| | | | | | | 자기기 | 자금 | | |
| 시 | 설 | | | | | 차 입 |] 금 | | |
| 자 | 급 | | | | | 투자요 | -청액 | | |
| | | 소 | 계 | | | 소 | 계 | | |
| 합 | 계 | | | | | 합 | 계 | | |
| 소요 산출 (운전, | | | | | | | | | |

7.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

| 조 직 | (임시, 정규조직 구성 운영 등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인력운영 | (소요인원, 인력 확보방안 등) |

8. 추진일정

| 구 분 | 일 정 | | | | | |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|
| ਜ ਦ | 0000 | 0000 | 0000 | 0000 | 0000 | 0000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_ | |
| | | | | | | | |

9. 기대효과

| | (향후 사업전망 및 비젼 등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
| 기대효과 | |
| 八川五叶 | |
| | |
| | |

<별지서식 2>

신규사업 선정 평가표

| 사 업 명 | | | | |
|-------|--|--|--|--|
|-------|--|--|--|--|

1. 목적사업 부합여부

| 평 가 항 목 | А | В | С | D | Е | 비고 |
|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-|
| 목적사업 부합여부 | | | | | | |

2. 평가점수

| 평 가 항 목 | nij 24 | 평 점 | | |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|---|---|---|----|-------|
| 8 / 8 5 | 매심 | А | В | С | D | Е | 평균 | 1 112 |
| 사업 매력도 | 50 | | | | | | | |
| 사업 적합도 | 50 | | | | | | | |
| 사업 리스크 | -30 | | | | | | | |
| 총 점 | -30~ 100점 | | | | | | | |

3. 평가결과 종합

| 평 가 의 견 | (신규사업 사업계획 | 의 적정성 및 | 문제점, 보 | 반사항 등 의견 | 명시)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과 기 이 기 | | 1-4 | 01 | ٥١ | |
| 평 가 일 자 | | 년 | 월 | 일 | |
| | | | | 심의위원 : | (인) |
| | | | | 심의위원 : | (인) |
| | | | | 심의위원 : | (인) |
| | | | | 심의위원 : | (인) |
| | | | | 심의위원 : | (인) |
| | | 신규시 | P업 선정평기 | · 심의위원장 : | (인) |

4. 평가기준

| э н | 세부평가항목 | | בי וווי | 5년 71 | 세부평가기준 |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구 분 | 항 목 | 평가항목 | 배점 | 평점 | 점수 | 세 목 | |
| | | | | | 10 | ○ 1,000억원 이상 | |
| | | | | | 8 | ○ 1,000억원 미만 | |
| | 시장규모 | 시장참여 5년후의 시장규모 추정 | 10 | | 6 | ○ 500억원 미만 | |
| | | 718117 18 | | | 4 | ○ 100억원 미만 | |
| | | | | | 2 | ○ 50억원 미만 | |
| | | | | | 10 | ○ 15% 이상 | |
| | | 시장참여 5년간의 | | | 8 | ○ 15% 미만 | |
| | 성 장 성 | 연평균 | 10 | | 6 | ○ 10% 미만 | |
| | | 시장성장률(%) | | | 4 | ○ 5% 미만 | |
| | | | | | 2 | ○ 2% 미만 | |
| | | | | | 10 | ○ 13% 이상 | |
| 사 업 매력도 | 수 익 성 | 영업이익율(%) | 10 | | 8 | ○ 10% 이상 | |
| | | | | | 6 | ○ 7% 이상 | |
| " 132 | | | | | 4 | ○ 5% 이상 | |
| | | | | | 2 | ○ 5% 미만 | |
| | | 가도 시장 신규진입의 용이성 | | | 10 | ○ 매우 낮음 | |
| | - 진입강도 | | 10 | | 8 | ○ 낮음 | |
| | | | | | 6 | ○ 보통 | |
| | | | | | 4 | ○ 높음 | |
| | | | | | 2 | ○ 매우 높음 | |
| | 경쟁강도 | 시장참여 시 주요경쟁사와의 경쟁강도 | 10 | | 10 | ○ 매우 낮음 | |
| | | | | | 8 | ○ 낮음 | |
| | | | | | 6 | ○ 보통 | |
| | | | | | 4 | ○ 높음 | |
| | | | | | 2 | ○ 매우 높음 | |
| | | 소 계 | 50 | | | | |

| - u | 세 | 부평가항목 | - vil = 1 | ll | | 세부평가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
| 구 분 | 항 목 | 평가항목 | 배점 | 평점 | 점수 | 세 목 |
| | | | | | 10 | ○ 10억원 이하 |
| | | | | | 8 | ○ 50억원 이하 |
| | 투자규모 | 필요자금 규모 | 10 | | 6 | ○ 100억원 이하 |
| | | | | | 4 | ○ 200억원 이하 |
| | | | | | 2 | ○ 200억원 이상 |
| | | | | | 10 | ○ 매우 높음 |
| | | 고객에게 제공되는 | | | 8 | ○ 높음 |
| | 기 술 력 | 기술 및 서비스의 | 10 | | 6 | ○ 보통 |
| | | 적합성 | | | 4 | ○ 낮음 |
| | | | | | 2 | ○ 매우 낮음 |
| | | | | | 10 | ○ 매우 높음 |
| 사 업 사 업 적합도 수행능력 | 인력, 기술력 보유설비의 | 10 | | 8 | ○ 높음 | |
| | | | | 6 | ○ 보통 | |
| | , 00 , | 적합성 | | | 4 | ○ 낮음 |
| | | | | | 2 | ○ 매우 낮음 |
| | | | | | 10 | ○ 매우 높음 |
| | 마케팅વ | | 10 | | 8 | ○ 높음 |
| | | 기존 마케팅력과의 적합성 | | | 6 | ○ 보통 |
| | | | | | 4 | ○ 낮음 |
| | | | | | 2 | ○ 매우 낮음 |
| | | 장기적 비전에 의한 인력, 자금 등의 지원가능 여부 | 10 | | 10 | ○ 매우 높음 |
| | | | | | 8 | ○ 높음 |
| | 경영지원 | | | | 6 | ○ 보통 |
| | | | | | 4 | ○ 낮음 |
| | | | | | 2 | ○ 매우 낮음 |
| | | 소 계 | 50 | | | |

| - u | 세부평가항목 | | - 31 - 1 1 | 75 74 | | 세부평가기준 |
|------|--------------|--|--|-------|----|----------|
| 구 분 | 항 목 | 평가항목 | 배섬 | 평섬 | 점수 | 세 목 |
| | | | | | 0 | ○ 없음 |
| | 실 패 손 실 액 | 신규사업 실패로 인한 추정 손실액 | △3 ~ 0 | | △1 | ○ 10억 이하 |
| | | | | | △3 | ○ 10억 이상 |
| | | 환위험, | | | 0 | ○ 없음 |
| | 금융위험 | 이자율 위험, 물가위험 | △3 ~ 0 | | △1 | ○ 낮음 |
| | | 2/1111 | | | △3 | ○ 높음 |
| | | | | | 0 | ○ 없음 |
| | 계약위험 | 계약의 적법성, 공정성, 완결성 | 방목 배점 평점 점수 세 이 이 없음 스1 이 10억 이 소3 이 10억 이 요음 이 없음 어려. 우이 수3 이 요즘 스1 이 낮음 스3 이 높음 이 없음 우위험. 우이 수3 이 높음 이 이 없음 우위험. 우이 수3 이 높음 이 이 없음 수1 이 낮음 수3 이 높음 이 이 없음 수1 이 낮음 수3 이 높음 이 이 없음 수1 이 낮음 수3 이 높음 | ○ 낮음 | | |
| 리스크 | | | | | △3 | ○ 높음 |
| (사업) | | 발주처 신용위험, 대금지급 위험, 세금위험, 보증위험 | | | 0 | ○ 없음 |
| | | | | | △1 | ○ 낮음 |
| | | 711日刊日, 上6刊日 | | | △3 | ○ 높음 |
| | | 인허가, 인력운영, 노사관계 안정성, 운영비용, 인프라 확보 등 | | | 0 | ○ 없음 |
| | 운영위험 | | | | △1 | ○ 낮음 |
| | | | | | △3 | ○ 높음 |
| | 컨소시엄 위 험 | 파트너 재무 안전성, 사업 수행 역량 | | | 0 | ○ 없음 |
| | | | | | △1 | ○ 낮음 |
| | | | | | △3 | ○ 높음 |
| | | 소 계 | | | | |

| 구 분 | 세 | 부평가항목 | בי וווי | 과 기 | | 세부평가기준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구 분 | 항 목 | 평가항목 | 배점 | 평점 | 점수 | 세 목 |
| | | 정부정책결정 투명성, | | | 0 | ○ 없음 |
| | 정치, 법률 위 험 | - ' o o, 규제 공정성, 사업부 공정성, | △3 ~ 0 | | △1 | ○ 낮음 |
| | | 법률체계 효율성 | | | △3 | ○ 높음 |
| | | | | | 0 | ○ 없음 |
| | 공정거래 위 혐 | 정치적, 사회적 공정거래 신뢰성 | △3 ~ 0 | | △1 | ○ 낮음 |
| 리스크 | | | | | △3 | ○ 높음 |
| (국가) | | 테러 및 번죄로 | 0 ○ 없음 러 및 범죄로 한 손실 발생 ~ 0 △1 ○ 낮음 | ○ 없음 | | |
| | 테러, 범죄 치안 위험 |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| | △1 ○ 낮음 △3 ○ 높음 | △1 | ○ 낮음 |
| | | 710 6 | | | ○ 높음 | |
| | | 환경 인허가 및 위험 규제 위험 | △3 ~ 0 | | 0 | ○ 없음 |
| Š | 환경위험 | | | | △1 | ○ 낮음 |
| | | | | | △3 | ○ 높음 |
| | | 소 계 | △12 ~ 0 | | | |
| 총계 | | △30 ~ 0 | | | | |

<별지서식 3>

신규사업 선정 재심청구서

| 사 업 명 | | |
|--------|------------|---|
| 부 서 명 | | |
| 재심청구사유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신 청 인 : (인 |) |
| | 년 10 년 1 | ′ |